단위면적당 가축사육수수개정

석 희 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

지난 9월 17일, 우리부에서는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하 "가축사육기준")을 개정 · 고시하였다.

2002년 12월말, 국내 축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고, 이어 2004년 3월에 제정 · 고시한 가축사육기준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번 고시개정은 가축사육기준 시행 이후 축산현장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동물복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축산과학원 등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일부 미비 사항들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개정하여 공포된 고시는 소요면적 기준이 일부 변경(돼지, 닭) 되거나, 신설(오리) 되는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에 대한 홍보 · 계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먼저, 금번 개정된 고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돼지의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 일부 조정

○ 웅돈, 종부대기돈(군사), 후보돈, 육성 · 비육돈의 두당 소요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완화
○ 자돈단계를 초기(20미만) 및 후기(30kg미만)로 세분하여 소요면적을 차등하여 적용
○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 조정내용을 반영한 경영형태별 두당 소요면적 조정

⑴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자 돈		육성돈	비육돈
현 행	9.7	1.4	3.9	1.4(스톨),3.1(군사)	3.1(군사)	0.3		0.6	0.9
개 정	6.0	1.4	3.9	1.4(스톨),2.6(군사)	2.3(군사)	초기자돈	후기자돈	0.45	0.8
						0.2	0.3		

⑵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3	비육경영-4
현 행	0.89	2.51	0.93	0.72	0.87
개 정	0.79	2.42	0.90	0.62	0.73

2. 닭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

○ 육계의 시설형태별 구분을 케이지 및 평사(무창 · 개방)에서 무창 및 개방(강제 · 자연환기) 계사로 변경

○ 육계의 소요면적 기준을 마리수(㎡/수)에서 중량(kg/㎡)으로 변경, 토종닭 수당 소요면적을 현행 산란계(평사) 기준에서 육계 기준으로 변경

⑴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육계)

구 분	시설형태		수당면적
현 행	케이지		0.042㎡/수
	평사	무창	0.046㎡/수
		개방	0.066㎡/수
개 정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⑵ 산란계는 기존 내용 그대로 유지

계 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 고
산란계	케이지	0.042㎡/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수	100일령까지

3. 오리의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기준 신설

○ 오리의 수당 소요면적기준을 산란용 및 육용으로 구분하여 신설
○ 육용오리의 사육시설이 무창 또는 고상식인 경우에는 별도 소요면적을 차등하여 적용

⑴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수 적용

⑵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구 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 용 오 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①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금번 고시 개정은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축산업등록 관련 규제의 완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국내 가축사육기준을 선진국 등 국제 기준에 부합시킴과 동시에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농가 등에서는 가축사육기준이 가축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의 최소 소요면적을 제시한 것으로 고시한 소요면적이 가축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충분한 면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해당 가축별 소요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가축사육기준은 축산업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제26조에 근거한 의무규정으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축산법 제56조 제6호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축산과학원 등을 통해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축산 선진국들의 현황과 사례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본 지면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에 대한 유럽 등의 움직임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전체국가는 유럽연합 규정(1999/74/EC)에 따라 2012년부터 관행적인 케이지를 이용한 산란계의 사육을 금지하기로 하고 2003년 이후 관행적인 케이지의 신설을 금지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이보다 앞서는 2008년부터 동 규정을 적용키로 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축산업 관련 제도와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행적인 케이지 이외 내부에 횃대, 산란상, 깔짚 등이 별도로 제공되고 충분한 면적이 제공되는 다단식 방사시스템(Aviary system) 또는 복지형 케이지(Enriched cage) 등이 허용되지만 그 소요면적기준은 2012년부터 0.11~0.075㎡/수로 우리나라의 소요면적기준(0.042㎡/수)과 격차가 심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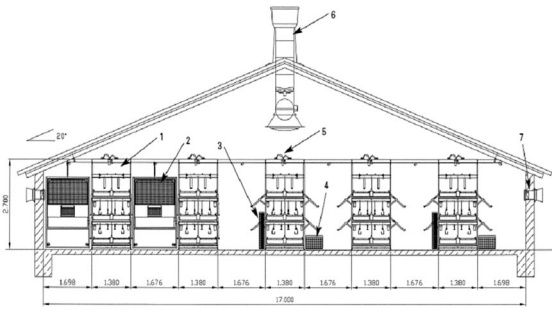

〈다단식 방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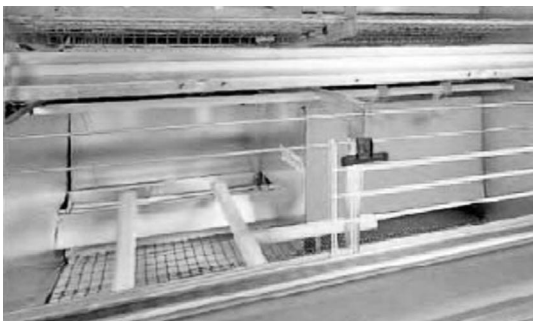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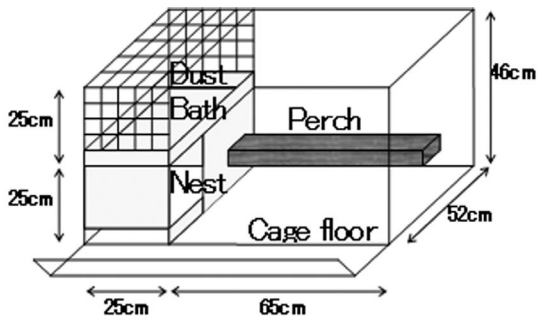

〈복지형 케이지〉

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케이지는 0.055㎡/수로 강화된 소요면적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미 설치된 케이지(0.045㎡/수 적용)는 202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소요면적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생산자단체인 UEP(The United Egg Producer)에서 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백색종 0.044㎡/수, 갈색종 0.049㎡/수)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국내 소요면적 기준(0.042㎡/수)에 맞춘 케이지뿐만 아니라 0.045㎡/수까지 보다 넓게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된 케이지가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이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과밀한 사육 여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앞서 설명한 선진국 등 국제 사회의 움직임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란계 사육기준의 강화에 대한 검토 · 논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장시설 등 제반 여건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양계 사육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찾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양계